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(주)머스트자산운용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정 2014.11.26.
개정 2016.02.19.
개정 2016.10.06.
개정 2021.08.06.

제1조(목적) 본 기준 및 절차는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, 법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제 1항 제2호에 의거 (주)머스트자산운용(이하“회사”라 한다)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,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(이하“관련법규”)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 및 회사의 관련 내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일임계약과 자문계약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.

1. 보수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: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
나. 판매보수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
다. 신탁업자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
마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업무 등을 제공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
바. 성과보수: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 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보수로서 법 제86조, 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규약에 산정방식에 따라 정의된 경우 수령하는 보수

2. 수수료

가. 판매수수료: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

판매 수수료로 구분

나. 환매수수료: 집합투자 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시 일정한 범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. 이는 펀드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재산에 편입됨

다. 투자일임 기본수수료 및 투자자문 기본수수료: 회사가제공하는 투자일임자산 및 투자자문자산 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약속된 수수료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와 관계 없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수수료와 후취수수료로 구분

라. 투자일임 성과수수료 및 투자자문 성과수수료: 회사가제공하는 투자일임계약 또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

마. 기타수수료: 회사가 신고 또는 보고한 경영업무,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말한다.

제4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 ① 회사는 수수료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,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.

제5조(수수료의 부과절차) ①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및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,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과 관련된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규약, 투자자문(일임)계약 및 기타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 등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상대방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.

④ 투자일임수수료 및 투자자문 수수료의 경우 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일임계약서 및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, 수수료 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각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설명의무)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제 19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수료 고지) 회사는 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보고서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(공시 및 통보) 회사가 이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담당부서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 58조제3항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칙(2014.11.26.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.

부칙(2016.02.19.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6.10.06.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1.08.06.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1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.